

**밀양 문화예술회관 조감도****목 차**

<b>■ 건설관련 소식 ..... 1</b>	<b>■ 지식정보 ..... 13</b>
- 경남 미래50년 전략사업 투자유치 본격화	-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
- 경상도,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추진	-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 대동~매리간(국지도69호선) 도로사업 본격 시행	-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으로 지방비 예산 절감	-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
- 경상도, 하천 수해복구사업 본격 착수	-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구조설계 다수 적발
- 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 본격 정비 나선다	- 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
- 경상도, 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본격화
- 경남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부산, 서울, 창원, 영주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경남道 - 건설업체 - LH합작 "배워서 남준다"	- 국토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나선다
- 도랑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경상도, 대형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b>■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27</b>
- 경상도,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 집중 안전 점검 한다	<b>■ 신기술 정보 ..... 32</b>
- 경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누리길 조성"	<b>■ 건설기술심의 결과 및 계약심사 현황 .... 35</b>
- 산청 한방제약 산업단지 기업체 투자협약 체결	<b>■ 기술인 나눔 정보 ..... 36</b>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준비 나선다	

###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투자유치 본격화

▶ 경남도, 항공기 부품 전문기업 동영M&T와 투자협약 체결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5일 오전 11시 도정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 송도근 사천시장, 장성호 동영 M&T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투자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밀양 나노산단에 (주)피엔씨, (주)코사인과 첨단나노 융합산업 투자협약을 약속했고 지난 6월 함양 제2산단 (주)애그로닉스와 향노화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11월 4일 산청 한방제약산단에 (주)휴롬, (주)이에스바이오텍, (주)월드푸드, 기화바이오 생명제약(주), (주)신선F&V, 비엠생명공학(주) 등 6개 기업의 투자협약이 이어졌다.

이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본격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투자협약의 주요내용은 동영M&T는 사천시 축동면 축동구호농공단지에 오는 2016년까지

2만 6천㎡의 부지에 16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127명의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투자협약은 도의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체 면담과 홍보활동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사천 종포산단과 사천임대 전용산단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항공산업 국가산단 지정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이때 항공기 부품 전문기업인 동영 M&T의 투자소식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항공산업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사천은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영M&T는 2003년 설립하여 항공기 부품 및 산업용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서, 장성호 대표는 삼성전자(주) 생산기술 연구소를 거쳐 삼성테크윈 기체생산에 잔뼈가 굵은 전문 기술자로 제18회 기능올림픽 정밀기계제작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한항공 등에 납품하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항공 산업 국가산업단지에도 33,000㎡ 이상 투자를 계획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기업유치팀당  
(055)211-3144





## 경남도,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추진

▶ 홍준표 도지사, 예결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만나 국비확보 지원 특별 요청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1월 12일 국회를 방문,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경남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건설, 창녕~현풍 고속국도 확장(대합IC설치),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하동항 건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또한, 이날 예결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국회에서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2015년 국비확보 T/F팀' 운영 전략회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 윤영석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박성호 예결위원, 김성찬 예결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실무 보좌진이 함께 참석했다.

홍덕수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경남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미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이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뛰고 있다” 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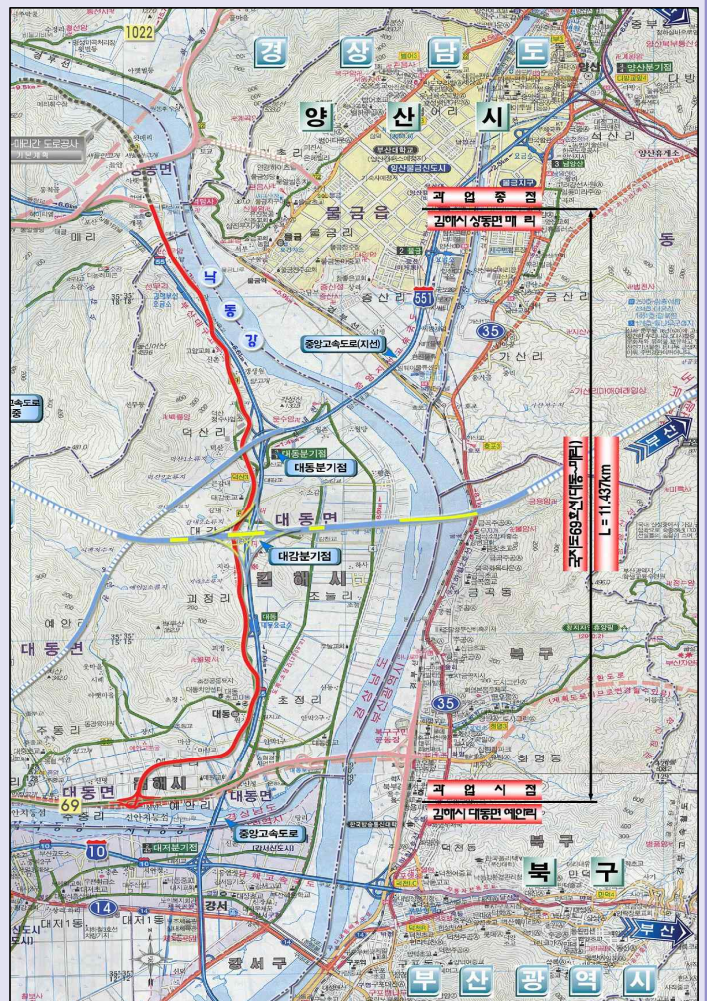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11월 12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30일부터 심사가 진행 중이다.

■ 자료 : 도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3



## 대동~매리간(국지도 69호선) 도로사업 본격 시행

▶ 올해 12월 중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



경남도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에서 상동면 매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대동~매리간) 도로건설공사를 12월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대동~매리간) 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328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말 착공하여 2020년 완공예정이다.

사업구간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 상동면 매리 구간 11.4km를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및 신설하고, 주요 간선도로 연결부 및 마을 진입구간에 교차로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 및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던 지역 현안사업이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대동~매리간) 도로 건설공사 시행으로 현재 경남도에서 공사 시행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상의 생림~상동간 도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매리~양산간 도로와 접속되어 낙동강으로 단절된 김해와 양산을 연결함으로써,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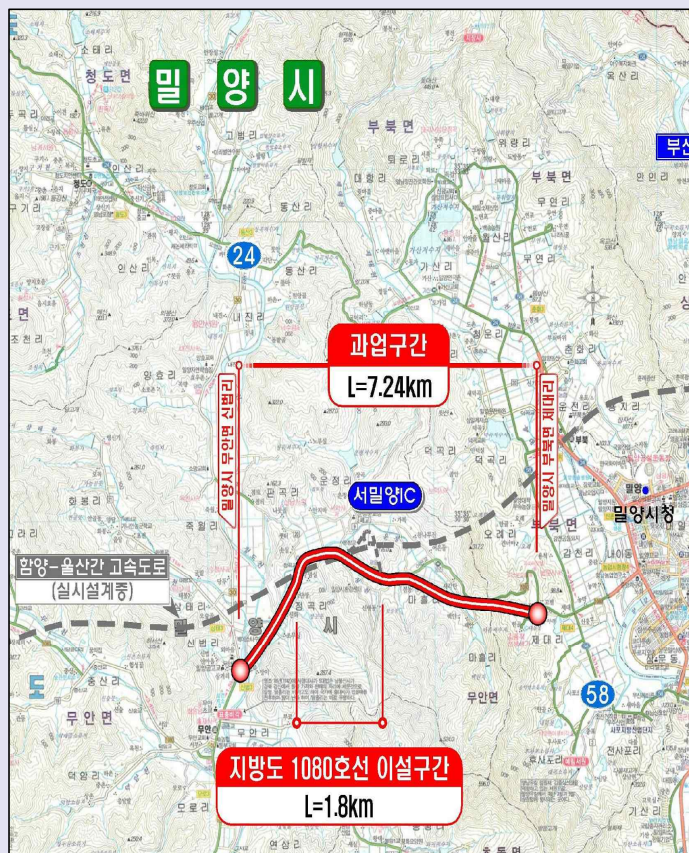
특히, 김해시 대동면 일원 낙동강을 따라 도로가 신설됨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친수구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및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여 김해와 양산지역 관광객들의 방문 유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4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으로 지방비 예산 절감

▶ 지방도 1080호선 구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도비 198억 원 절감



경남도는 밀양 무안~내이간 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일부 구간(L= 1.8km)을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함으로써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것이다.

이번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방도 1080호선의 밀양 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국도(밀양~창녕구간)의 서밀양IC 진입도로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경남도는 무안~내이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공사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을 깎거나 터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선정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노선을 활용함에 따라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의 서밀양IC 예정지 인접지역에 지방도와 간섭되는 구간(L=1.8km)이 발생하였고, 간섭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시행토록 협의함에 따라 198억 원의 도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도는 그동안 도로 관계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존 노선 활용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의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과 협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4



## 경남도, 하천 수해복구사업 본격 착수

▶ 수해복구 하천 실시설계 용역관계자 회의 갖고 복구사업 조기 착공 추진

경남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하천 실시설계 용역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수해복구의 신속한 추진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용역기간 단축, 설계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위해 도 실무자와 하천설계 용역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도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때 실시설계 수행지침 준수, 용배수시설 및 진출입 현황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에 완벽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하천분야 피해는 244건 152억 5300만 원(지방하천 85건 81억 1300만 원, 소하천 159건 71억 4000만 원)이며, 이로 대한 복구비는 485억 2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피해가 심한 창원 진동천, 함안 쌍계천, 고성 어신천, 금봉산천 등 4곳(사업비 268억 3600만 원)에 대해 경남도가 직접 복구를 추진하며, 지난 5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완료했다.

나머지 복구가 필요한 240곳(사업비 216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시군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을 시행한다.

하일선 경남도 하천과장은 “내년 초까지 복구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우기 전 주요시설물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고, “아울러 시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복구사업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준공함으로써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하천과 하천관리담당 (055)211-4664

## 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 본격 정비 나선다

▶ 11월부터 전 시군 일제조사 재산권 침해 하천예정지 삭제 등 정비 추진

경남도는 하천예정지로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사유권 침해 논란 등 도민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하천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 사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는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하천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에 ‘하천예정지’로 표시되어 하천 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재산권 침해 하천예정지에 대한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일선 경남도 하천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예정지 중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하천과 하천시설담당  
(055)211-3934

## 경남도, 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

▶ 복구비 85,679백만원 확정 및 복구계획 수립·시행

경남도는 지난 제12호 태풍“ 나크리 ”, “ 8.17 ~ 21일 ”및“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및 지방비 부담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우수기 이전에 수해복구 공사 준공을 목표로 설계 및 사업시행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는 농경지 20.86ha, 주택 323동, 이재민 56명 등 5억 원이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96개소, 하천 99개소, 소하천 193개소 등 320억 원이다.

경남도는 금번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85,679백만 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복구계획 및 지방비 부담계획을 수립, 해당 시군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내년 우수기 이전 수해복구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시군별 복구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39,569백만 원, 고성군 21,926백만 원, 우심 시군인 함안군 11,849백만 원과 자력복구 대상인 김해시 등 13개 시·군 12,335백만 원 등 총 85,679백만 원이다.

11월초 현재 재해복구 추진상황으로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1,503백만 원을 지급 완료 하였고, 공공시설 피해 복구는 총707건 중 설계 중 577건, 공사발주 및 공사 중 125건, 준공 5건을 추진 중이며, 내년 우수기 전 공사완료를 목표로 조기복구 TF 팀을 5개 반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사 시 역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복구 할 계획이다.

이재건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사전대비, 비상단계, 복구단계 등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초기대응(골든타임)에 전 행정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과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 협업기능을 활성화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 자연재해팀당 (055)211-4543



## 경남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 분야별 · 시기별 안전문화운동 중점 실천 과제 발굴
- ▶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한 도민 참여 확산’ 방안 논의



경남도는 경상남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경남안문협)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17일 도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지난 9월 개최된 제1차 실무위원회에 이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중점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 등 경남안문협의 실질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경남안문협’ 실무위원회는 경남도, 경남도 교육청, 경남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경상남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 30명을 위원으로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내년도 경남안문협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도민 스스로 평소 무심코 지나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도민 참여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진다.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은 “경남도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실무위원회가 발굴한 실천과제를 기초로 안전문화가 도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 안전기획팀당 (055)211-4514

## 경남도-건설업체-LH 합작 “배워서 남준다”

▶ 저소득계층 주택 리모델링에서 자녀 멘토까지 ‘도민행복주택’ 지원

경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13년부터 시범시작으로 3가정을 10년간 30가정을 계획하는 ‘도민행복주택’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민행복주택」은 道에서 어린이재단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가정당 33백만원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업체에서는 리모델링추진에 3천만원, LH공사는 3백만원의 물품기증 및 자녀들 멘토 역할까지, 행정지원 및 휴일 이삿짐 운반 등 One stop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그 동안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난 10월말로 덕진종합건설, 태영건설, 한림건설, 마루건축, 덕산종합건설의 재능기부를 받아 창원, 진주, 김해지역에 6가정(다문화 3·조손 1·친인척위탁 1, 저소득 1)을 지원한 건설업체 대표자들은 자녀들이 무엇보다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더 경남도의 공익 건축행정추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해마다 지원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민행복주택」은 저소득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주택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이후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413

## 도랑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

▶ 도랑 옛 모습 찾기로 도랑에 생명을 ! 마을에 활기를 !

경남도는 생활하수 등 오염으로 방치되어 있는 마을 앞 도랑을 빨래도 하고 가재도 잡던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도랑 살리기 사업”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랑은 수질·수량·수생태계 측면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것에 비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하천·지방하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오염원 제거, 수질정화 미생물 방류 등의 방법으로 도랑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년 54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랑 내 오염이 심한 곳, 인근에 주거지나 관광지가 있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등 시·군별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도랑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은“이 사업이 마을주민과 지역기업체,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정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도랑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아니라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활기를 넘치게 함으로써 도민 화합의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하천과 하천시설담당  
(055)211-3938





## 경남도, 대형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 ▶ 부실시공 등 품질관리 필요

경남도는 호우 등으로 옹벽붕괴와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안전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하여 지난 8. 27. ~ 9. 30.까지 창원시 등 5개시의 대형공사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공사 147개소, 민간공사 98개소 등 245개(창원 72, 진주 24, 김해 40, 양산 54, 거제 55) 사업장을 대상으로 159개소(공공147, 민간12) 사업장을 표본점검한 결과, 공공분야 24건과 민간분야 7건 등 총 31건을 지적하였다.

- 공공분야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 민간분야는 해당시장에게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과다계상 등 설계도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공사에 대하여는 재정상 2,277백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다.

공공건설 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김해시에서 발주한 『김해운동장 트랙교체공사』를 2014.1.20.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괄하도급하여 시공한 사례가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요구 하였고,

『도시계획도로(대로3-8호선)개설공사』 실시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지반조사를 소홀히 하고 소하천정비계획과 맞지 않도록 설계를 한 “B” 설계사와 “C” 설계사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설계도서 보완 후 공사 시행토록 시정조치 요구하였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외 6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거나 단위시멘트량을 부족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6개 레미콘 업체를 행정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거제시에서 발주한 『아주도시계획도로(대로 3-3호선) 개설공사』의 교량(라멘교)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급된 레미콘에 대한 염화물 시험결과 이온량이 0.3kg/m<sup>3</sup>이하이어야 함에도 측정결과 0.431~0.750kg/m<sup>3</sup>로 기준치를 초과한 레미콘이 반입되어 폐기처분토록 조치하고, 불량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한 “E”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요구했다.

특히, 민간건설 분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 소재 “A”아파트 건설공사는 “ㄱ”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ㄴ”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표본점검한 결과 철근 피복두께가 시방서 기준보다 미달되게 시공하거나,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균열발생과 내구성 저하요인이 되는 곰보, 공극 등 표면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해당 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철근 피복두께 부족》

또한, “A”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하였다.

○○○에서 발주한 “B”아파트 건설공사는 “ㄷ”건설사에서 도급받아 시공 중인 현장으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점검결과 확인되었고,

철근피복두께가 시방서 기준보다 부족하게 시공하거나 곱보, 공극 등의콘크리트 표면결함이 발생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 소재 “C” 아파트 건설공사는 “ㄹ”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ㄹ”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재료 공급원인 “ㄴ”업체에서 공급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공기량과 슬럼프테스트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공기량은  $4.5 \pm 1.5\%$ 가 적합한데도 1.8%, 2.0%인 레미콘이 공급되고,



《 공기량 측정 》

슬럼프는  $120 \pm 25\text{mm}$ 가 적합한데도 190mm, 170mm인 레미콘이 공급되고 있어 폐기처분토록 하였다.



《 슬럼프측정 》

○○○ 소재 “D”아파트 건설공사는 “ㅅ”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ㅇ”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설계도서 작성 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하게 작성하고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철근이 노출되거나 철근피복두께를 시방서 기준보다 미달되게 시공하고,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곱보, 공극 등 표면결함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소재 “E” 아파트 건설공사는 “ㅈ”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직접시공 중인 현장이고, ○○○ 소재 “F” 아파트 건설공사는 “ㅊ”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ㅋ” 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으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 소재 “G”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ㅌ” 건설사는 흠막이 에이치빔에 토류판 설치 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앵커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에이치빔과 토류판만 설치하고 앵커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 시행 중 흠막이 시설이 전도되어 인근도로가 유실되는 등 시공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도 있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실시한 대형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현장 확인결과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현재 도내에 건설공사 중에 있는 여타 169개소 아파트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서도 시·군으로 하여금 자체감사토록 요구하였고

주택건설사업 감리비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감리활동이 저해되므로 감리비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료 : 도 감사관 기술감사팀당  
(055)211-2273



## 경남도,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 집중 안전점검 한다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개 시군 다중이용시설 56곳 안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도내 14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56곳으로 대형숙박시설 25곳, 종교시설 22곳, 기타 다중이용시설 9곳이며, 연말연시 대비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사고 원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 【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개요 】

- ◇ 점검기간 : 2014. 12. 1. ~ 12. 31. 기간 중
- ◇ 점검반 : 2개반 6명
- ◇ 점검목표 :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
- ◇ 점검대상 : 56개소
  - 대형숙박시설 : 25 개소(모텔, 호텔, 펜션 등)
  - 종교시설 : 22개소(교회, 성당 등)
  - 기타 다중이용시설 : 운동시설, 전시시설 등 9개소
- ◇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점검사항에 따라 현장 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 점검 병행 실시

중점점검 사항은 시설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운영계획, 시설물 및 건축물 손상 등 안전성 여부, 전기·가스·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화재예방을 위한 인화물 및 소화장비 관리 상태, 기타 안전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구인모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당  
(055)211-4525



## 경남!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누리길 조성”

▶ '15년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4개소, 36억 확보·추진

경남도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산책길인 “누리길 조성”사업에 국고확보 노력으로 내년도 4개소, 36억원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개소, 30억대비 6억 여원이 추가 확보된 것이다.



2015년도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창원 산성산 숲속나들이길에 7억원, 양산 천성산 멜로디길에 10억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창원 국화꽃 향기속으로에 10억원, 김해 동신어산 누리길에 9억원이 계속사업으로 투입된다.

신규로 투입되는 산성산 숲속나들이길은 석교마을에서 장복터널을 잇는 누리길로 숲길, 쉼터, 유적 안내판 등이, 천성산 멜로디길은 법기저수지에서 무지개폭포(평산동)를 잇는 누리길로 멜로디서비스, 전망대 등의 시설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사업인 '김해 동신어산 누리길'은 친화·배움·보전·모험의 숲 등 테마별 특색있는 공간으로, '마산 국화꽃향기속으로'는 예곡동 일원에 계절별·테마별 꽃길 조성과 마을벽화, 안내시설 등 개성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누리길 조성사업은 조성 완료 3개소, 추진 중 5개소로 총 8개 사업에 2011년부터 63억 3300만원(국비 42억 5000만 원, 지방비 20억 8300만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완료된 '창원 천주산', '진해 장복산', '양산 금정산·천성산' 누리길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으며, 추진 중인 '마산만 노을길', '김해 백두산 누리길', '양산 법기 치유의길' 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생태적·문화적 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길 조성사업은 도민의 건강과 여가문화 확산에 대응한 산책로 및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관계자는 "누리길 조성사업을 국정과제인 여가공간 조성 시책에 맞추어 기존 산책로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불량한 미관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친환경문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055)211-4525

## 산청 한방제약 산업단지 기업체 투자협약 체결

▶ 항노화 관련 6개 기업체와 투자협약 체결로 산업단지 입주 가시화



경남도와 산청군은 4일 오전 11시 도청 도청회의실에서 홍준표 도지사와 허기도 산청군수, 기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에 6개 업체 370억 원의 투자유치와 21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는 2014년 ~ 2018년까지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306,904㎡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위해 그동안 전국 한방·항노화 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밀한 입주 수요조사와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도는 산청 지역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1,000여 종 이상의 산약초가 생산되는 등 우리나라 최대 한방·향노화 제약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경남도와 MOU를 체결한 기업체로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한 (주)이에스바이오텍은 부산시 소재 (주)월드푸드와 공동으로 16,533㎡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소와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소재한 비엠생명공학(주)는 9,917㎡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운다.

또 (주)휴롬은 16,529㎡ 부지에 100억 원의 투자로 공장을 설립하며, (주)기화바이오생명 제약, (주)신선에프앤브이는 각 9,917㎡의 부지에 70억 원과 5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하고 이전하기로 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이번 투자협약을 발판으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기업 투자 유치와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향노화산업과 백두대간권담당 (055)211-6523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준비 나선다

▶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본부 운영

경남도는 매년 찾아오는 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대비하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13개반 66명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사전대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로 나누어 재난대응에 나선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폭설이 우려되는 지역에 눈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폭설에 대한 기상청 특보가 발효되면 제설 전진기지 15곳에 제설장비 350대, 인력 447명을 신속히 배치하고, 시군과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등 제설을 위한 준비에 전 행정력을 쏟는다.

특히, 강설이 시작되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갯길이나 국도·지방도·군도 등 61곳의 산간도로는 월동장비 미장착 차량을 통제하고, 산간고립이 예상되는 51곳 1,402세대 2,562명에게는 비축된 구호물자를 고립 시 즉시 지급하여 구호에 차질 없도록 조치한다.

도는 농·축·수산시설의 강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 가구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는 이번 겨울철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산간고립이 예상되는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책임담당제를 지정·운영한다.

지난 25일에는 경남도 겨울철 방재요원을 대상으로 창원기상대에서 기상전망과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발 앞서 겨울철 재난대응에 나섰다.

이채건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겨울철 재난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2팀당 (055)211-6523

###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

####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

\*\*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다.

○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 1++ , 1+ ,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절감에 따른 효과

구분 내 용	전용면적 46㎡			전용면적 84㎡		
	0%절감	30%절감	40%절감	0%절감	30%절감	40%절감
총 에너지 사용량[MJ/년]	43,486	30,427	26,081	68,665	48,066	41,199
에너지 절감 금액[원/년]	0	260,121	346,828	0	410,910	547,880
30%대비 절감액[원/년]	-	-	86,707	-	-	136,970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sub>2</sub>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 시공능력평가, 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 관련 시행규칙 개정…… 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해 신뢰성 높여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하여 기업의 안정성 진단을 강화한다.

공사실적의 경우 최근의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주며, 기술능력의 평가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현행]

시공능력평가액(가중치) = 공사실적평가액(75%)+경영평가액(75%)+기술능력평가액(30%)±신인도평가액(25%)

### [개정]

시공능력평가액(가중치) = 공사실적평가액(70%)±경영평가액(80%)+기술능력평가액(30%)±신인도평가액(3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 입법예고(기간 11.5 ~ 11.25)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별 비중조정)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즉,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실질자본금×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중자산-중부채) × 경영평점 × 80/100

(공사실적평가 개선)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하여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하였다.

\* **최근 1자년도 1.2×공사실적, 2자년도 1.0×공사실적, 3자년도 0.8×공사실적**

(경영평가 개선)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하여 4개에서 5개로 변경한다.

[현행]

경영평점 : (유동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 4

[개정]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 평점+이자보상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 5

(기술능력평가 개선)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환산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신인도평가 개선)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시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한다.

(개념 재정의)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하여 시공능력평가의 본질적 개념과 부합하도록 하였다.

(기타) 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 하던 것을 보다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를 제공하여 발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 원)~7등급(87억 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3%이내-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전화 : 044-201-3513, 팩스 044-201-5546)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3



##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발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인·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
  -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음
  - (개선)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
- ②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확대
  -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 (개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 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 ③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 (현행)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여 왔으나,
- (개선)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하여 사전에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팩스 044-201-5534)

■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3





##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가능

### ▶ 관련 시행령 개정...농어촌 의료시설 부족 해소 기대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해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1.4)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되어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를 정례회 외에 임시회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하였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5→50㎡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 ▶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 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 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구분	가스 유해성	방출 열량	심재 변형·용융	종합
적합	30	24	7	7
부적합	-	6	23	23
계	30	30	30	30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 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 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

▶ 환기구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건축 허가·유지점검 시 확인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라 한다)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금)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일 배포한다.

금번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불임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 <건축구조기준 표 0303.2.1> 기본등분포 활하중 (단위 : kN/m<sup>2</sup>)

용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비고
지붕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 활하중)	1.0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등 예상 시
	나. 산책로 용도	3.0	보도면에 설치(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	보도면에 설치(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시)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하였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KMIC-007-2014)하였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 명시하면서, 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 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 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하였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044)201-3758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부리뽑기 본격화

- ▶ 11.15일부터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 ▶ 저가낙찰공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등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5.14, 시행 11.15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 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조치와 함께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 (예시1) 토목공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이미 등록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위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3.5억원(조경사업의 50%)을 감면

\* (예시2) 기계설비공사업(자본금 기준 2억)을 등록된 건설업체가 건축공사업(자본금 기준 5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1억원(기계설비공사업 50% 범위 내)을 감면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 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책으로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497



## 부산, 서울, 창원, 영주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 2017년까지 5,530억원 투자,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경제기반형)·서울시·창원시·영주시(근린재생형) 4곳에 대해 총 5,52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부산시(2,952억원), 서울시 중로구(459억원), 창원시(1,765억원), 영주시(353억원)

이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작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쇠퇴가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정되었고, 이후 지자체별로 주민·공공기관·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16개 관계부처의 장 및 13명 민간위원으로 구성**

국토부는 '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1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12개 관계부처도 25개 사업에 2,215억원을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 건축규제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1,4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상세 계획 >

① (부산 : 경제기반형) 한국전쟁 피난민 정착과 항만 운영 등으로 번영했던 부산역-부산항 일원이 부산항 기능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는 것을 다시 정비하고 경제기반을 재구축한다.

북항 재개발,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역 일원에 ICT, 관광, 영상 등 새로운 산업 기능을 유치하고, 배후 상업·주거지역의 차이나타운, 산복도로 마을 등을 활용한 도시관광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북항과 부산역·원도심을 연결하는 창조지식플랫폼을 건립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입주시켜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② (서울 : 근린재생형) 종로구 창신동·송인동 지역은 70년대 봉제산업의 밀집으로 형성되었으나 봉제산업의 침체와 8년간의 뉴타운 사업 지연에 따른 갈등과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고통받던 지역을 주민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근의 동대문 패션상가 등과 연계하여 기존 봉제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공가를 창신·송인동의

청년 디자이너들의 의류상품 제작 등 봉제 작업공간으로 제공하고, 패션상가와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통한 유통 플랫폼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추진중인 한양성곽을 활용한 마을관광자원 개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③ (창원 : 근린재생형)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 舊 마산지역(오동동·동서동 등 일원)은 국내 첫 자유무역항인 마산항과 제조업 활황에 힘입어 '80년대 전국 7대 도시였으나, 공공청사의 이전 및 마산항 기능축소 등으로 인구감소(60만 → 40만) 및 쇠퇴가 심화되었다.

본 선도지역 사업은 이은상, 문신 등 지역 예술가 등이 활동했던 구도심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골목길을 살린 창동예술촌·창작공예촌을 활성화하고, 마산항 임항선 폐선로를 활용한 공원 조성 및 마산항 워터프론트 조성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④ (영주 : 근린재생형) 중앙선과 영동선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지인 영주시는 '73년 영주역이 이전되면서 원도심(영주 1·2동 일원)의 빈점포 증가 및 인구 감소 등 쇠퇴가 심화되었다.

일제 강점기 및 '50년대 근대 한옥건물 등이 남아있는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의 경관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 관광수요 등을 유치하고, 고령화된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생활공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 향후 일정 등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 하향식 사업 일변도의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계획 및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현 정부의 역점 지역개발사업이다.

국토부는 금년 지정한 13곳의 선도지역 중 나머지 9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도출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 **전안, 청주, 공주, 군산, 순천, 목포, 광주동구, 대구 남구, 태백**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압축성장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단위 개발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도시 내부의 오래된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도시재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도시재생과 (044)201-3732**



## **국토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나선다**

▶ **11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11.11일부터 11.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과 더불어 시공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건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화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실한 감리업무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14.5.23),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 포함**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 I. 개요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21(금)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임차인·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부과

< 감정평가사 징계처분 추이(’08~’14.7) >

연도	'08	'09	'10	'11	'12	'13	'14.7
건수	62	12	41	55	68	34	10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14.6~)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II. 대책의 주요내용

### 1.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

(의뢰 단계)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

공적평가는 현재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한다(12개 법령 → 56개 법령).

\* (예시) 「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 (예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

\*\* 기타 재의뢰 도입이 필요한 영역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규정 유지 (시·군·구청장이 평가업자 2인 선정, 일정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재의뢰)

(실시 단계)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현행) 대상물건 개요 부분 → (개선) 소재지, 평가목적, 실지조사 내용 등 구체화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현재, 1가지 방식(주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후,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나, 주된 방식에 의한 결과만 평가서에 기재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 (현행)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음

(개선)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

< 참고 > 감정평가 방식 관련

-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공시지가기준법 포함)**, 수익방식
- (공시지가기준법) 토지 평가의 주된 방식이며,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순으로 적용

(심사 단계)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 현행 감정평가 심사 제도 >

구분	자체심사	사전심사
심사주체	같은 법인 소속 평가사 (대형 : 의무 / 중소형 : 임의)	협회
심사대상	모든 평가	일정규모의 공적평가 (150억 원 이상 보상평가 등)
제재수단	없음	없음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2.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징계권한 일원화)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 현행 징계 체계 >

- (징계권 이원화) 감정평가사징계위 → 평가사 징계 / 공무원 → 법인 징계
- (문제점) 침익적 처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법인 징계의 실효성 미흡
- \* '00년 이후 업무정지 등 법인에 대한 징계 사례 없음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적격자 영구 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하여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한다.

\*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 (연 8백 건 → 2천 건),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한다.

< 타당성 정밀조사와 표본조사 비교 >

구분	정밀조사	표본조사
목적/방식	징계 / 제보, 수사기관 의뢰	제도개선에 활용 / 무작위 추출
조사주체	감정원, 협회	감정원
조사건수	15건('13년)	800건('14년)

## 3. 업무환경 개선

(합격자 수 감축)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14년 180명 → '17년 150명)

\* 최소합격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 확장·발표 예정

< 감정평가 시장 현황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시장 규모 (억원)	5,286	5,643	5,507	5,698	5,887	6,046
1인당 수입 (억원)	1.98	2.00	1.86	1.83	1.79	1.75
등록 평가사 (명)	2,667	2,828	2,958	3,103	3,287	3,452
응시인원 (명)	4,084	2,189	2,100	2,181	1,815	1,793

(윤리교육 강화)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연 150분 → 300분),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적평가 개선 전후 비교('한남더힐' 사례)>

구분		현행
의뢰	선정주체	임차인 및 시행사
	재의뢰	×
실시	평가내용	재량 과다
심사	자체심사	△(대형법인)
	사전심사	×
	심사자의 책임	×
제재		최대 자격 · 등록취소

개선
감정원 또는 협회(요청시)
○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모든 법인)
○
○
최대 영구제명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고면서,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 입법예고일 : 2014. 11. 2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16호)
- 예고기간 : 2014. 11. 28. ~ 2014. 12. 18.

#### □ 개정이유

이용객 편의증진과 다양한 레저활동 촉진 등 하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레저 시설 허가기준 신설 등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 □ 주요내용

- 가.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에 점용물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내용 추가
- 나. 하천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기준 추가
- 다. 하천내 야영장, 경량항공기 등 레저시설 설치 기준 추가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28, 팩스 : 044-201-5558

■ 자료 : 국토교통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입법예고일 : 2014. 11. 2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97호)
- 예고기간 : 2014. 11. 27. ~ 2014. 12. 18.
- 개정이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적용되던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규제완화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수용세대수 상한 폐지(안 제16조제7항제1호)
  -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건축물의 건축 이전에도 필지분할 가능(안 제17조제4항제2호)
  -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 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36 Fax 044-201-5661

■ 자료 : 국토교통부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11. 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70호)
- 예고기간 : 2014. 11. 5. ~ 2014. 11. 25.
-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 사항으로 운영하던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훈령」\*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 주요내용

### 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①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 《제3장 제17절》

- (적용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 ~ 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 ~ 15%
-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기부채납의 부담기준에 포함
-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현 행	개선 방안
○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	○ (기준 목적) 공공성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를 이루고, <b>과도한 기부채납 방지</b> 를 위함
○ 부담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 부담기준을 <b>원칙사항으로 운영</b>
○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담기준 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결정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단, 기준을 <b>초과할 경우 사유를 명백히 제시</b>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결과에 따른도록 규정	○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도 <b>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른</b>

※ 위 표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동일 적용

②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 완화 《5-2-1》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율을 산업단지 도로확보 기준\*을 고려하여 완화 (10 → 8%)

\*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 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km<sup>2</sup> 미만인 경우 8% 이상, 1km<sup>2</sup> 이상인 경우 10% 이상(「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2호)

②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

- (적용대상)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기부채납의 부담기준에 포함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③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 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신설》

- (적용대상) 개발행위허가 종류 중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의 채취
- (총부담량)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5%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기부채납의 부담기준에 포함
-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 내용을 명확화

□ 의견제출

동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14, 3709 / Fax 044-201-5569

■ 자료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입법예고일 : 2014. 11. 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50호)

□ 예고기간 : 2014. 11. 5. ~ 2014. 11. 25.

□ 개정이유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2, 3515 팩스 : 044-201-5546

■ 자료 : 국토교통부



## 주열식 연속벽체를 이용한 저토피 토사구간 터널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쌍용건설(주)
	(주)건화
	(주)정토지오텍
	주식회사 성우지오텍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5호
- 보호기간 : 2014.10.08.~2019.10.07
- 기술분류 : 토목>터널>터널 구조물 설치
- 내용요약

지하철 공사 등 도심지에서 개착공사를 적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 환경민원, 인접구조물의 피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비개착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터널 상부지반이 얇은 저토피구간에서는 침하가 발생하기 쉽고 다량의 보강공사로 인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도심지 저토피구간에서 터널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터널측면에 콘크리트 연속벽체를 먼저 시공하고 터널 천장부에 강관을 아치형태로 압입한 후, 강지보재로 Roof를 형성(그림3)하고, 측면 벽체와 강지보재를 연결하여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터널공법을 신기술로 개발하였다.

설치된 Roof형태의 강지보재는 연속벽체를 부분 절삭하고 앵커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기존 비개착공법 보다 응력 및 변위제어 효과가 20% 가량 우수하며, 연속벽체 설치에 의한 보강효과로 복잡한 갱내보강공사가 불필요하여 공사비 26% 절감과 공사기간 23%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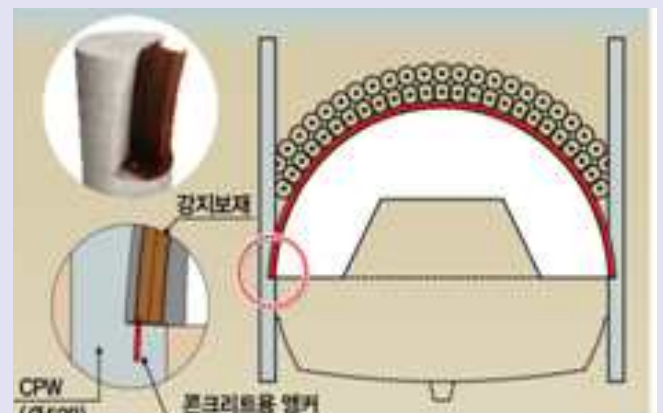
《(그림1)기존 기술(개착공법)》



《(그림2)신기술의 비개착 공법》



《(그림3)신기술의 강지보재 설치》



《(그림4)신기술의 연속벽체와 강지보재 접합》

2013년 발표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도 향후 도심지 터널구간이 66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지상교통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본 신기술의 활용이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저토피(토피고 1D이하, D:터널폭) 토사구간에서 대구경 강관보강그라우팅과 강지보재를 설치하여 루프를 형성하고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저토피 토사터널공법

주열식 연속벽체와 강지보재의 접합을 위한 연속벽체의 절취, 케미칼앵커 또는 브라켓 시스템을 이용한 연속벽체와 강지보재의 접합구조 시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된 T프레임과 H프레임을 이용하여 외벽과 칸막이를 지지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엔아이씨이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6호
- 보호기간 : 2014.11.10.~2019.11.09
- 기술분류 : 기계설비>건설기계>건축기계설비
-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저장식수의 부식오염방지와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외부보강 공법으로 물탱크 내부에 복잡한 격자형식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 H프레임을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 조립하여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며 물탱크 내부에 수압 저항용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청소 시 활동이 자유롭고, 물탱크에 비축된 물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가 용이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임.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시켜,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대응
	주식회사 씨엠디기술단
	(주)한국항만기술단
	초석건설산업(주)
	대호산업개발(주)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7호
- 보호기간 : 2014.11.14.~2019.11.13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지반개량 및 보강
- 내용요약

심층혼합처리공법용 안정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인 페트로 코크스 탈황석고 및 고로슬래그, 고칼슘플라이애쉬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육가크롬이 용출되지 않는 지반안정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속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어 기존 공법의 로드 비틀림 현상과 안정재의 쓸림현상이 개선된 심층혼합처리공법이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페트로코크스 탈황석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고칼슘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지반안정재를 주입하고, 심층혼합처리장비의 교반로드 회전속도 및 회전방법, 안정재 분사방식을 변경하여 지중 개량체를 시공할 수 있는 심층혼합처리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014년 제12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2건, 실시설계 적정성3건,
- 심의일자 : 2014. 11. 23.(화)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12-01	실시설계 (적정성)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마리면 하고리 · 사업내용 : 하천공 - 축제 4,291m, 보축 1,160m 하상유지공 - 보개량 4개소, 어도설치 4개소 하천환경공 - 친수공간 3개소, 생태공간 4개소 · 사 업 비 : 224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8년(4년)	거창군 (건설과)	조건부
2014-12-02	실시설계 (적정성)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7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부지조성 49,980㎡ 건물 3개동(본관 3,182㎡, 종합검정실 588㎡, 농산물가공센터 1,224㎡) · 사 업 비 : 144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6년(2년)	함양군 (농축산과)	조건부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12-03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사천시 (전략사업담당관)	조건부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6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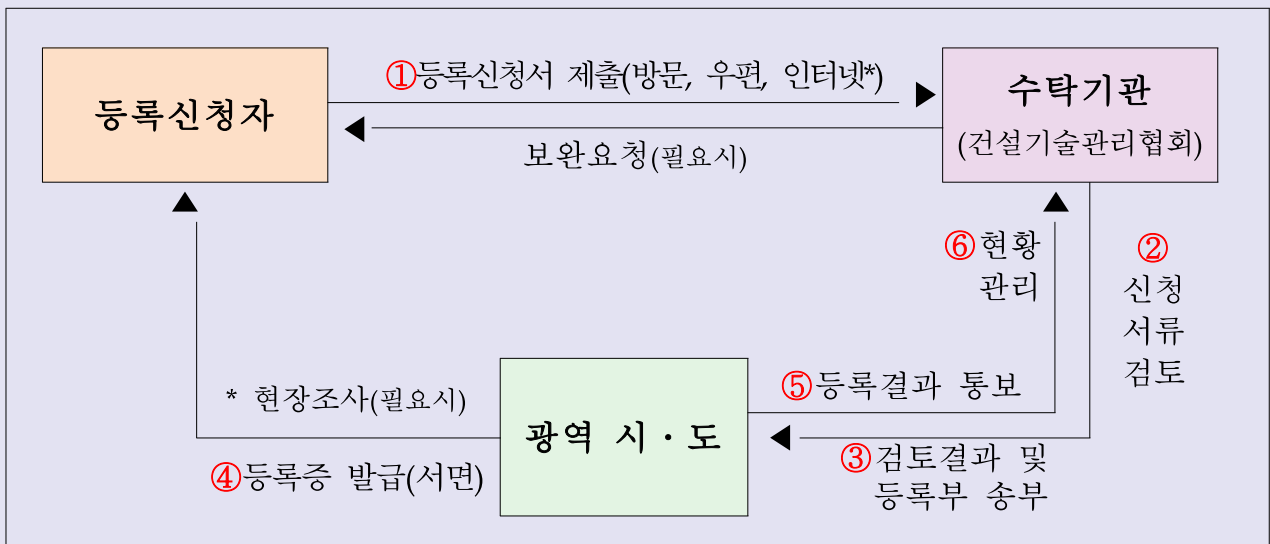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11월	<b>계</b>	<b>34</b>	<b>44,207</b>	<b>42,186</b>	<b>2,020</b>	<b>4.57%</b>	
	공사	토목	15	33,912	32,315	1,597	4.71%
		건축	3	4,043	4,024	19	0.45%
		기타	4	2,368	2,133	235	9.94%
	용역	6	3,095	2,933	162	5.25%	
물품	6	789	781	8	1.01%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 이내(2015. 5. 22.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함.



-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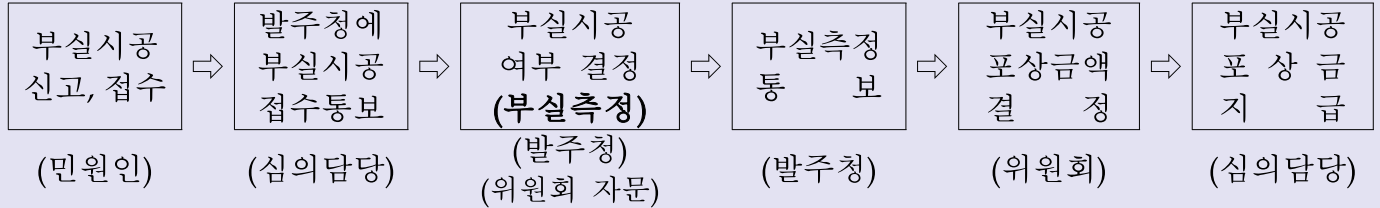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http://211.53.241.200>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경상남도([www.gsnd.net](http://www.gsnd.net)) 및 건설정보([www.gnci.gsnd.net](http://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도급액 50억이상 건설공사

### II. 처리절차



### III.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상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5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3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 I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4622~46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46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rudgh123@korea.kr](mailto:rudgh123@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